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19가합54687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정범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5. 21.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74,934,210원 및 그중 274,660,270원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27,986,43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7,986,43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43,486,43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3,486,43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1.경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을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9. 12. 18.로 하며, 향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권보전비용 등을 별도 상환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에 대하여 이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연 1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하기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위 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소외 주식회사 C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명목으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9. 3. 1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 A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6. 21. 이 사건 대출금 관련 원리금 274,660,27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채권보전비용으로 273,940원을 별도 지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 A는 2019. 1. 2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A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당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한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같은 시기 피고 A는 ① 기술보증기금에 대하여 855,786,000원,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724,950,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1.경 기준 시가는 2억 3,000만 원, 2020. 9.경 기준 시가는 2억 1,45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D기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채권보전비용의 합계 274,934,21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74,660,270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6.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9. 6. 21.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채 두 달이 되기 전인 2019. 3. 12.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날 원금연체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에는 이미 피고 A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같은 이유로 그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후, 실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약 3개월 뒤 위 대출금 일부를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유무

1) 피고 A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한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그 적극재산액이 2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그 무렵 소극재산으로는 ①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만도 855,786,000원,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도 724,950,000원에 이르는 등 이미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때 피고들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3)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처남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고 향후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이에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소외 E은 피고 A의 지인으로 2018. 4.경 피고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어 그에 따른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B은 위 E의 누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 B과 E은 사실상의 처남매부지간인 점, ② 피고 A는 2018. 12.경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사를 타진하였고, 이에 E이 피고 B에게 소개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은 2억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는데, 피고 B은 그 계약금 2,300만 원을 자신의 자금이 아닌 E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잔금 1억 9,700만 원 중 14,261,799원을 피고 A의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변제로 갈음하였다는 것인데, 그 지급예금주 역시 E이며, 146,787,916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는 것이며, 나머지 35,950,285원은 E의 피고 A에 대한 2018. 4.경 3,000만 원의 대여금 및 그 이자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현실로 지급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일자(2019. 1. 24.)인데,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완료된 점[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일자(2019. 1. 31.)보다도 앞선 시점이다], ⑤ E은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물변제받은 결과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매수인인지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에 대한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기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은행 및 F은행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조).

2) 이에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9.경 기준 시가가 2억 1,450만 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고,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설정되어 있었다가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자 G은행의 피담보채무액은 146,513,563원, 근저당권자 F은행의 피담보채무액은 4,000만 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 214,500,000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한 27,986,437원(= 214,500,000원 - 146,513,563원 - 40,000,000원)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7,986,4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관용, 판사 이재욱, 판사 전훈자

목 록

1동의건물의표시	강원도 춘천시 H I아파트 J동 [도로명주소] 강원도 춘천시 K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L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15층 M호 99.54㎡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 강원도 춘천시 H 대 41713.8㎡ 대지권의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41713.8분의 51.220. 끝.

